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 주요 질의 응답(FAQ)

1차 - 2022.4.1.(금)

2차 - 2022.4.8.(금)

*2차 FAQ에 추가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기

1. 공통

■ 사업 내용

사업 개요를 소개해주세요.

데이터(기술)를 활용한 예술작품 창작과 확산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신규사업으로, 예술계의 기술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 제공기업과 희망 예술인(단체)을 '바우처 방식'으로 매칭지원합니다.

모집과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1단계로 문화예술 맞춤형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하고, 선정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상품(서비스)을 소개하는 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계획하는 예술활동에 1단계에서 선정된 데이터기술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단체)을 모집합니다. 예술인(단체)은 매칭을 희망하는 데이터기업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예술인(단체)-데이터기업-예술위 간 3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 모집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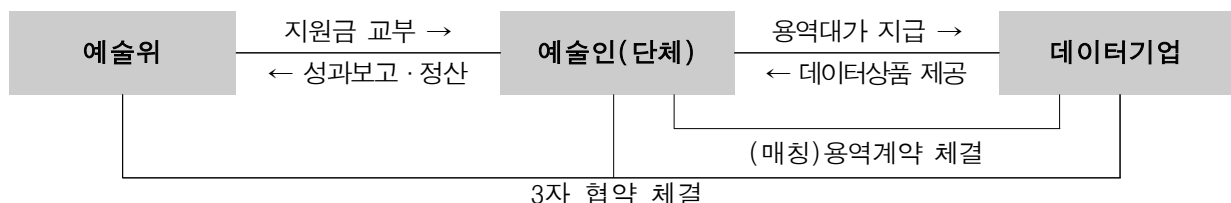
(1단계) 데이터기업 : 2022년 3월 29일(화)~4월 19일(화)

(2단계) 예술인·단체 : (예정) 2022년 5월 18일(수)~6월 2일(목)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예술위는 선정 예술인(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며, 예술인(단체)은 매칭 기업에게 데이터상품(서비스) 구매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3자 협약서' 체결 이후, 예술인(단체)과 기업 양자 간 '기술 거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하는 데이터상품(서비스) 구매비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2. 데이터기업

■ 신청 자격

데이터기업과 예술인(단체)이 미리 매칭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추가](#)

[1단계 공모] 이전 단계에 데이터기업과 예술인(단체) 간 사전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공모 절차에 따라 각 대상별 신청과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의 진행 절차는 ① **[1단계 공모]** 데이터기업 선정 → ② 22년 제공가능 바우처(문화예술 맞춤형 데이터 상품(서비스)) 목록 공개 및 기술설명회 개최 → ③ **[2단계 공모]** 예술인(단체) 선정입니다.

예술인(단체)은 **[2단계 공모]** 단계에서 **[1단계 공모]**로 선정된 데이터기업과 협의하여 지원 신청해야 하며('사전협의서' 제출 필수), **[2단계 공모]**에서 예술인(단체)가 최종 선정된 경우, 데이터기업과 예술인(단체)간 상호 매칭이 완료됩니다.

예술단체와 미리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추가](#)

[1단계 공모]에서 데이터기업은 예술인(단체) 사전협의를 무관하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공모] 예술인(단체) 모집 단계에는 선정 데이터기업과 사전협의를 필수이므로('사전협의서' 제출 필수), 각 대상별 모집요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서비스 제공 전문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추가](#)

데이터 전문기업이 아니라도, 예술인(단체)의 작품 창작/확산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기술역량을 보유하여, 사업의 최종 산출물을 데이터 형태(통계/텍스트/음성/이미지/동영상/GIS 등)로 제공 가능한 기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분야 기술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단체)의 데이터기술 활용 예술활동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예술단체인데 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데이터기업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데이터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예술단체라면 데이터기업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부문 신청자격에 따라 개인 예술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업 정보 확인자료 제출이 필수이니, 자세한 자격사항은 공고문의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가공 기술만 보유하고 있고, 원천데이터 공급은 다른 곳에서 제공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원천데이터 출처가 외부인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원천데이터 수집 출처'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상품 개발 단가 산출 시 '데이터 구매비'를 편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창작지원과 향유확산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추가](#)

예술작품의 창·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면 [창작지원 유형], 이미 만들어진 예술작품의 확산이나 유통을 지원한다면 [향유확산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지원] 예술작품 창·제작,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데이터상품(서비스) 제공

[향유확산] 예술작품 판매, 유통, 마케팅, 확산 등을 위한 데이터상품(서비스) 제공

한 기업이 창작지원, 향유확산 두 가지 유형 모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추가](#)

한 기업이 [창작지원], [향유확산] 유형 둘 다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품 매칭 건수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요? [추가](#)

사업 수행기간(6~11월) 동안 기업에서 동시에 제공 가능한 상품(서비스) 수량을 산정하여 지원신청서 상 '매칭 건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개 기업이 사업 기간 동안 2개의 예술인(단체)에게 상품(서비스)을 제공한다면, 매칭건수는 2건입니다.

상품(서비스)의 단가와 수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한 기업 당 최대 1.5억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단가] 창작지원 25백만원 X [수량] 데이터상품 6개 = [지원금] 1.5억

예술인(단체) 협업 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인가요?

기업-예술인(단체) 매칭을 통해 예술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예술인(단체)과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며, 이는 '수행역량'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략.체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협업에 임하는 각오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단가표 산출내역을 인건비만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데이터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별도의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만으로 단가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품 단가표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추가

데이터상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직업인건비(내부 수행인력-개발자, 기획자 등), 직접경비(데이터 구매비, S/W 사용료, 외부 인력 사례비, 자문료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홈페이지 등) 구축 등에 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업정보 확인자료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

데이터기업 공모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번호	서류정보	발급방법	비고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2	국세완납 확인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발급신청→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
3	지방세 완납 확인	정부24 →(자주찾는서비스)지방세납세증명	-
4	4대보험 완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	-
5	채무불이행 확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같음	8번 서류로 대체
6	휴·폐업 확인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화면 캡처 이미지 제출	조회 화면 캡처 이미지 제출
7	부정당제재 확인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 * 부정당제재 해당사항이 없을 시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조회되므로, 검색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조회 화면 캡처 이미지 제출
8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사(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디앤비/나이스평가정보 등)를 통해 발급(유료)	-
9	실적증명서 (실적 있는 경우 제출)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공통→계약실적증명 * 발주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실적증명서 승인 관련 문의는 발주기관에 연락	선택사항